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4-51
----------	-------

제출년월일 : 2024. 3.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절차(안 제3조~제6조)

다. 환수조치(안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2. 29. ~ 3. 20.(제출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불수용)

-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용어이므로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용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정책이나 법률은 모두 ‘저출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에 ‘저출생’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불수용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구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장애인 가정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동장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는 생략 가능하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4. 장애인증명서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입금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 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신생아와의 관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대 상 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신생아와의 관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출 생 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p>본인은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사업부서 및 읍·면·동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등록장애 정보 확인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입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2, 3번 첨부서류는 담당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확인 처리 사항 ※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신청인의 마포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제1항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강나은
연 락 처	02-3153-8873